

2013년 연말정산을 위한 세테크레포트

- ▶ 올해 연말정산 환급량이 받는 연말정산 세테크 TIP
- ▶ 국세청에서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밀11가지
- ▶ 알아두면 유용한 주택 매입 세테크

[]회원님은 2013년 과세표준이 21,707,102원으로 예상되어 E구간에 해당하므로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는 경우 16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구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	추가공제금액 100만원 일 때 환급액
A	0	0	0
B	8,333,333원 이하	2.97%	29,700원
C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4.62%	46,200원
D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11.55%	115,500원
E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6.50%	165,000원
F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6.40%	264,000원
G	88,000,000원 초과 3억원 이하	38.50%	385,000원
H	3억원 초과	41.80%	418,000원

기혼-외벌이

본인 관련

• **장애인공제**

복지법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외에도 암·중풍·치매·희귀난치성환자가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양가족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액	회원님의 환급액
3,500,000	577,500

또한 해당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공제액 등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등공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취학·취업·질병등의 사유로 일시외거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며 결혼으로 인한 분가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보장성보험료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유무는 보험회사나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구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의료비공제**

회원님의 의료비 최저한도는 연봉의 3%인 1,410,000원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합계가 최저한도 밑이라면 공제가 안 되므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금공제**

회원님의 소득금액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34,150,000원(A)입니다. 지정 기부금은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더라도 세법이 정한 최고한도내에서만 공제되는데, 회원님의 지정기부금공제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기부금종류	소득금액(A)	최고한도
종교단체	34,150,000	3,415,000 (AX10%)
종교단체 외		10,245,000 (AX30%)

다만,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지정기부금도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관련공제(본인 명의만 해당)**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다른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무주택자로서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세대원인 경우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라 하더라도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소득공제대상이 되므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계좌개설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경우 다른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주택명의자와 대출자가 본인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타인명의로 주택 또는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또한 2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하거나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연금저축 소득공제(본인 명의만 해당)**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반드시 구분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납부액의 40%를 한도로 72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퇴직연금소득공제액과 합하여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혼동하여 공제받으면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연금저축 최대공제한도액과 회원님의 환급예상액, 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대소득공제액 (퇴직연금소득공제액 포함)	4,000,000
회원님의 환급예상액	660,000
금리 (환급액을 불입액 대비 금리로 환산, 이자소득세 감한 금리임)	19.5%

19.5%는 2013년 적용 정기예금이율 2.7%의 약 7.2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불입하며 55세 이후 10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중도해지시나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소득공제 받은 불입원금 및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대상이 되고 사용액합계가 회원님 총급여의 25%인 **11,750,000원**을 초과하여야 공제액이 발생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공제액인 500만원까지 공제 받기 위해서는 회원님께서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불수단	효율적인 소비조합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11,750,000원	0원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1,000만원	300만원
대중교통비	333만원	100만원
전통시장	333만원	100만원
합계액		500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공제한도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결제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 2013년도 근무지가 여러곳이거나, 소득종류가 여러가지라면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근로자)은 반드시 해당연도(2013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까지 근무지가 여러 곳인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2013년 최종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신고하여야 하고, 혹은 연말정산 시점에 퇴직하였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부모님 관련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등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부모님의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페이지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미리 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100만원 알아보기)
(->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제공동의 받는 방법 알아보기)
- 본인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하인 어머니를 공동부양 하고 있다면 아버지 또는 본인이 어머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형제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하인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고 있다면 형제 또는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하인 (외)조부모님을 부모님 및 다른 형제(삼촌 등)가 공제 받지 않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가 부모님을 미중으로 공제 받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면 국세청에서 과다 소득공제자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바랍니다.
- 60세 이상 70세 미만의 부모나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 한 분을 더 소득공제 받는다면 소득공제액 150만원이 추가되어 **247,5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